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8. 27. 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8월 12일

나. 발 의 자: 김지연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8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지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,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3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7조)

- 시책 개발 및 지원,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0조)
-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 - 본 제정조례안은

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제고함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가 보장될 수 있는 영등포구를 구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- 안 제2조(정의)에서 "노동"을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에 따른 "근로"로 정의하고, "노동자"를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에 따른 "근로자"를 포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여 포괄적 권리보장을 담보하고자 함.
- 안 제6조(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) 및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)에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"노동기본계획"을 수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,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
- 안 제8조(점검 및 평가)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한 후 각 계획에 대해 확류시키는 절차를 마련함.
- 안 제9조(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)부터 ~ 안 제12조(법률 지원 등)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과 지 워사업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도록 발의된 안건으로, 노동 권익 보장에 앞장서는 영등포를 만들고자 하는 선언적, 권고적 형태의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보임.
- 안건의 주요 내용은 ▲노동기본계획 수립 ▲ 노동자 권리보호·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에 따르면 "주민복지에 관한 사업"

- 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기에 해당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조례입법은 가능하다고 하겠음.
- 한편, 우리 구(區)에서는 「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, 「공 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, 「플랫폼 노동자 지 원 조례」, 「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」가 있으나 각각의 조례는 "감정노 동 종사자", "공동주택 관리 노동자", "플랫폼 노동자", "프리랜서" 같이 직업 군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"노동자"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조례는 없기에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

(김지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382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4. 8. .

발 의 자: 김지연 유승용 , 박현우

이규선 ㆍ신흥식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영등포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,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7조)
- 라. 시책 개발 및 지원,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0조)
- 마.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바.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4. 8. 6. ~ 8. 11.): 의견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산업안전보 건법」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 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노동"이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"근로"를 말한다.
 - 2. "노동자"란 근로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에게 적용한다.
 - 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
 - 2.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
-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,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

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,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6조(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) ① 구청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
 - 2.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
 - 3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
 - 4. 노동 관련 조사·연구 및 노동교육·상담
 - 5.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
 -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 -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)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8조(점검 및 평가)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9조(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)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,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) ① 구청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
 - 2. 노동환경 개선 사업
 - 3.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, 소득지원, 사회보험 가입 지원
 - 4.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
 - 5. 노동 안전 · 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
 - 6. 노동권익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
 - 7.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

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1조(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) ① 구청장은 노동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법률 지원 등) 구청장은 노동자의 세무상담,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